

#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기덕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794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7월 31일

발 의 자 : 김기덕, 강동길, 조상호, 이승미,  
김소양, 임종국, 홍성룡, 문장길,  
이정인, 송명화, 송아량, 송정빈  
의원 (12명)

## 1. 제안 이유

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제대군인들의 군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통해 제대군인과 그 가족의 행복증진 및 지역사회 경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.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시장은 제대군인이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업 연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3조)
- 나.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신청 및 지원정지에 관한 규정(안 제4조부터 6조까지)
- 다.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, 수당에 관한 규정(안 제7조부터 9조까지)

라.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 사무에 관한 위탁 규정(안 제10조)

### 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제대군인”이란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, 장교·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군 기술”이란 제대군인이 군 복무 중 습득한 정보통신, 기계, 의료, 이종산업간 융복합 분야 등의 기술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제대군인이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업 연계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창업지원) 시장은 제대군인이 군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
2. 창업 경영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제대군인의 군 기술 활용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지원신청 등)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시장에게 창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이 창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원 정지)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1. 사망한 경우
2.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
4. 그 밖에 「형법」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

제7조(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의 설치) ① 시장은 제대군인의 군 기술을 활용한 창업지원을 원활히 추진하여 위하여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
2. 창업지원 대상 군 기술의 선정에 관한 사항
3. 창업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제대군인 창업지원 관련 업무 소관 국장
2. 위촉위원 : 군 관련 기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성을 가진 사람

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9조(수당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·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0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제대군인의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을 효율

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) 시장은 제대군인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자치구 및 창업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(창업지원), 제9조(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 수당), 제10조(사무의 위탁)에 따라 비용 발생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조례안 제4조(창업지원), 제9조(수당), 제10조(사무의 위탁)

#### 나. 전제

-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기술병과로 제대한 군인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, 창업지원 비용은 서울창업허브의 사업 참여기업 1개사 위탁에 소요되는 수준으로 전제함
- 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는 15명(담당 국장 1명, 시의원 1명, 민간위원 13명)으로 구성하고, 회의는 연 2회 개최
- 제대군인 변동률 및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추계기간

- 2020~2024년으로 함(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 발생)

#### 라. 방법

- 연간 제대군인수에 기술병과 비율, 창업비율, 서울 거주비율을 곱하여 연평균 지원인원을 산출하고,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위탁업무를 수행중인 서울창업허브의 연간 위탁비를 사업 참여기업수로 나누어 1개사당 위탁지원 금액을 산출하여 추계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≙ 3,916,005천원(연평균 783,201천원)

- 총비용 = 창업지원 위탁비 + 위원회 참석수당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	계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창업지원 위탁비 (제4조 및 제10조)		779,301	779,301	779,301	779,301	779,301	3,896,505
	위원회 참석수당(제9조)		3,900	3,900	3,900	3,900	3,900	19,500
	소계(b)		783,201	783,201	783,201	783,201	783,201	3,916,005
□ 총 비용(b-a)			783,201	783,201	783,201	783,201	783,201	3,916,005

4. 덧붙이는 의견 : 의견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 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   여차민

예산분석관      박주용

☎ 02-2180-7943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

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서울특별시 제대군인 군 기술 활용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(창업지원), 제9조(제대군인창업지원자문위원회 수당), 제10조(사무의 위탁)에 따라 비용 발생

### 2. 세부추계내역

- 창업지원 위탁비 : 연간 지원인원 27명×1인당 위탁비 28,863천원×5년=3,896,505천원

※ 연간 지원인원 : 연평균 제대군인수(7,033명)×기술병과 비율(31.6%)×제대군인 창업비율(6.4%)×서울 거주비율(18.8%)=27명

- 연평균 제대군인수는 2014~2018년 평균 제대군인수 7,033명 적용

연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5년 평균
인원	6,316명	7,362명	7,322명	6,997명	7,170명	7,033명

자료 : e-나라지표, 제대군인 현황

- 기술병과 비율은 2012~2016년간 제대군인 기술병과 비율 31.6% 적용

연도	계	전투병과	기술병과	행정병과	특수병과	기타병과
인원	32,821명	16,563명	10,377명	1,700명	1,162명	3,019명
비율	100.0%	50.5%	31.6%	5.2%	3.5%	9.2%

자료 : 한국국방연구원(2017), 중기복무 전역군인 전직지원 강화방안 연구

- 제대군인 창업비율은 2011~2015년간 제대군인 창업비율 6.4% 적용

연도	전역자	취·창업자			
		계	취업(정규직)	취업(비정규직)	창업
인원	31,636명	18,378명	8,366명	8,001명	2,011명
비율	100.0%	58.1%	26.4%	25.3%	6.4%

자료 : 한국국방연구원(2017), 전역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군사기업 제도적 도입 및 발전방안 연구

- 서울 거주비율은 2018.12월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 인구(51,826,059명) 대비 서울 인구(9,765,623명) 비율 18.8%적용

- ※ 1인당 위탁비 : 2018년 서울창업허브 위탁비 15,181,877천원 ÷ 사업 참여기업 526개사 = 28,863천원
- 위원회 참석수당 : 수당단가 150천원 × 13명 × 연 2회 × 5년 = 24,000천원
  - ※ 참석수당 단가 : 「서울특별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」 제2조(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)에 따라 2시간 초과 150천원 적용
  - ※ 지급인원 : 위원 15명 중 담당 국장(1명)과 시의원(1명)은 제외